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공임대주택(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27.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입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7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영

38.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의 개선

39.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정책의 총괄·조정

40. 지하안전관리 제도 및 법령의 운영

41.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제54조제2항 후단 중 “88명”을 “89명”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8조의3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제5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③ 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주택 공급 관련 총괄 및 조정
2.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총괄
3.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제도의 수립·개선
4.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령의 운영
5. 공공주택의 유형·지역별 입주 수요량의 조사 및 분석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조사 및 발굴
7.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운영
8.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공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관리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관리 및 지원
13. 주거재생혁신지구 발굴·지정 등 사업 관리
14. 국유지·공유지, 쪽방 밀집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7.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
사업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영
21.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2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2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2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
의에 관한 사항

2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27.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⑤ 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
부장을 보좌한다.

⑥ 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
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20”을 “1,029”로 하고, 일반직 계 “1,010”을 “1,0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81”을 “99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527”을 “2,5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527”을 “2,536”
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18”을 “2,52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추진본부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5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토지실장이 분장한다.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58조의3제4항, 제58조의4제4항 및 제58조의5제7항 관련)

1.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3급 또는 4급 이하	12
특정직 계	1
경정	1

2. 광역급행철도기획과(존속기한: 2027년 11월 2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3급 또는 4급 이하	5

3. 주택공급추진본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52
일반직 계	52
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4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택토지실) ①·② (생략)	제12조(주택토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u>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u>	<u><삭 제></u>
18. <u>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u>	<u><삭 제></u>
19. <u>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u>	<u><삭 제></u>
20. <u>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u>	<u><삭 제></u>
21. ~ 25. (생략)	21. ~ 25. (현행과 같음)
26. <u>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개선</u>	26. <u>공공임대주택(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u>
27. <u>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등 공공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u>	27. <u>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입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u>
28. ~ 59. (생략)	28. ~ 59.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정책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영

6. ~ 35. (생략)

36. 지하안전관리제도의 운용

3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

제13조(건설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 ~ 35. (현행과 같음)

<삭제>

36. (현행 제37호와 같음)

3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영

38.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제도의 개선

39.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정책의 총괄·조정

40. 지하안전관리 법령의 운영

41.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58조(도시정비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정책관등 중 제11조 제3항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등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

----- 89명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④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② (생략)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 규

④ ~ ⑥ (생략)

<신설>

정된 범죄의 수사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③ 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주택 공급 관련 총괄 및 조정

2.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총괄

3.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제도의 수립·개선

4.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령의

운영

5. 공공주택의 유형·지역별 입주 수요량의 조사 및 분석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조사 및 발굴
7.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운영
8.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공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및 관리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관리 및 지원
13. 주거재생혁신지구 발굴·지정 등 사업 관리
14. 국유지·공유지, 쪽방 밀집 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7.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영
21.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2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2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2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2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27.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
기구의 관리 및 지원

⑤ 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
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
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
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
다.

⑨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
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20</u>	<u>1,029</u>	+9
·	·	·	
·	·	·	
일반직 계	<u>1,010</u>	<u>1,019</u>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81</u>	<u>990</u>	+9
·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27</u>	<u>2,536</u>	+9
일반직 계	<u>2,527</u>	<u>2,536</u>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18</u>	<u>2,527</u>	+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